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바회기수당 및
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5. 8. 5 .----- 최광렬의원의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8. 5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29회 정례회(폐회중)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(05.8.9) 상정 의
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18991호, 2005.8.5)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
지방의회

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개정(안 제3조제2항)
(회기일수 1일 70,000원 ⇒ 100,000원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1999.12.31 개정 조정된 이후 5년간 동결되어
왔으나 그 동안 물가 변동 및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05. 8. 5 지방자치법 시행령
제15조 별표6호의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상향 조정되어 공포 되었으므로
우리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
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